

세무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pp.219~252
한국세무학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손 혁** · 박성진*** · 이효익****

<요 약>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재무보고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방식과 공정가치의 도입으로 인해 현행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상 장부-세무상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그 종류와 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인세법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세무조정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자는 유보액을 관리하여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장부-세무상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세법에서도 일시적인 무형자산재평가를 허용하여 유보액 관리비용을 줄인다. 둘째, 과거에는 영업권으로 인식되었던 브랜드, 제호, 고객목록 등 새로운 계정과목들을 세법에서도 인정하여 세무조정으로 인한 직접비용을 줄이고 장부-세무상 차이로 인한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줄인다. 셋째, 결산조정사항은 경영자에게 이익조정과 조세납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즉, 무형자산과 관련된 장부-세무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측정과 인식, 손상 및 상각,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법규정의 신설 및 변경, 세무조정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무형자산, 공정가치, 장부-세무상 차이, 결산조정사항

* 본 연구는 삼일회계법인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succman@mensakorea.org, 02-760-0502,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gangclub2@hanmail.net, 02-760-0501,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hilee@skku.edu, 02-760-0502, 공동저자

I. 서 론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적 할인 현상(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과 같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련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재무보고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현행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공정가치회계를 도입하여 재무이용자에게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방법과 그 사유를 주석에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련 비용(설치비용 등)이 적지 않으나 조기도입한 기업은 2010년 3월 말 현재 40여개에 이른다. 이는 조기도입으로 얻는 효익이 비용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자산의 간주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서 회계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인식할 수 없었던 여러 형태의 무형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새로이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원가 대신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부가치와 기업의 실질가치 간 차이를 줄이는데 일조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회계로 측정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하에서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간 많은 충돌(특히, 유·무형자산에서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행기업회계기준의 기본 원칙인 취득원가주의와 현행 세법상 자산·부채의 인식과 평가 개념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방법의 차이조정 등으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무형자산과 관련된 공정가치의 평가는 측정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세법의 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정확한 법인세를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당기이익을 늘려서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는 반면 과세소득은 줄여서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는데,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확대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및 과세회피 유인 및 방식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현행기업회계기준에는 없었던 많은 새로운 개념 및 항목들이 등장하게 된다. 만약 세법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현행 세법을 유추 또는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기업과 과세당국 간 수많은 조세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무형자산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형자산 회계처리와 세무상 효과를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현행 세법의 문제점 및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의 유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조세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있고 전환시점에 간주원가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장부상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재평가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유보액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영업권을 기업가치평가법에 의한 매입가격과 개별 순자산가액의 차액에서 인식가능한 무형자산(특허권 등)을 차감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는 회계상 대차차액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여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업결합시 결합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이 재무제표에 추가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세법의 규정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무형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액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 또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세법적용의 원칙 중 하나인 기업회계의 존중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한다면 납세자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커짐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하의 영업권과는 구별되는 무형자산인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로열티계약과 객리스트 등은 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무형자산과 세법상 무형자산 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은 프로젝트의 진행단계와는 관계없이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지출은 내부창출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결합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이 세법상 어떤 항목(영업권, 개발비,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경영자의 자유로운 회계선택권을 부여하여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 손상차손을 거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이익을 줄이고 조세회피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 세무상 인정된 영업권 상각비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에는

1) 이러한 회계처리는 세액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고 이연법인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의 시기조정 등을 통해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를 결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영업권 손상 차손을 상각비의 일부로 보아 시부인해야 할지 아니면 자산의 임의평가로 보아 전액부인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영업권평가비용의 과다 등으로 세무상 인정되는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업의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위와 같은 회계와 세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세법에서도 일시적인 무형자산재평가를 허용하여 도입초기의 유보액 관리비용 및 과세소득 회피유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한다. 둘째, 단순히 영업권으로만 인식되었던 브랜드, 제호, 고객목록 등 새로운 계정과목들을 현행 세법상 영업권으로 본다면 세무조정이 급격하게 증대하여 장부-세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업회계준중원칙에 따라 무형자산과 관련된 규정을 세법에서 신속히 도입한다. 셋째, 결산조정사항은 태생적인 문제점(경영자에게 이익조정과 조세납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등)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유지에 따른 효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결산조정사항을 폐지하거나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후생의 손실을 막는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측정과 인식, 상각 및 손상,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법규정의 신설 및 변경, 세무조정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무형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III장 무형자산의 범위, IV장 무형자산의 평가, V장 무형자산의 상각 및 손상을 검토한 뒤 VI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무형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적 할인 현상을 완화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회계제도선진화 방안을 도입하고 관련 법률들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회계기준에서 국제적 표준방식을 도입하여 2011년도부터 상장법인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높아지고 국제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며 나아가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²⁾

2)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및 감독방향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원이 실시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기업가치가 2~4%, 시장 유동성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장사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먼저 도입하고 준비함으로써

무형자산을 본 연구의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무형자산이 과거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질 것이다.³⁾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써 과거 산업자본시대의 경우 유형자산(토지와 자본 등)이 부의 원천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지식 자본시대로 접어들면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원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기업회계기준으로는 기업가치 및 관련자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가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치와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기준에 비해 무형자산의 종류와 수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며 무형자산이 공정가치로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통해 재무상태표에 새롭게 인식될 무형자산에 대해 현행 세법의 관련규정이 매우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직접적인 효익-비용의 중심에 무형자산이 존재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환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주로 영업권, 무형자산, 관련자산의 손상(impairment)이었고 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회계처리 항목 중에도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⁴⁾ 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을 통해 여러 가지 효익을 얻으려 한다. 예를 들어, 키코(KIKO) 관련 손실로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하여 무형자산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비율을 개선하고자 한다.⁵⁾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권의 금액이 큰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상각비 만큼 회계상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세법규정 및 과세소득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 적용되는 공정가치모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유·무형자산이다. 새로 도입되는 공정가치회계는 기존 세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논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점과 해결책을 무형자산에서 분석하여 유형자산에 응용하여 확대 적

씩 기업내부통합관리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신문. 2008.8.25)

3)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기업가치(시가총액) 중 유형자산의 비중은 40%에 불과하나 무형자산은 50%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또한, EU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무형자산의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 규모에서 무형자산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4) 유럽연합에 속하는 대기업의 경우 회계영역별 평균 전환비용으로 파생상품(€348,000), 손상(€199,000), 영업권(€174,000), 무형자산(€149,000) 순이었다. 또한, 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회계처리 항목에서도 영업권과 무형자산이 각각 15%, 8%에 이르렀다.(금융감독원. 2008. 국제회계기준도입시 영향이 큰 회계처리항목과 사전공시해설)

5) 파이낸셜 신문. 2008.10.6

용할 수 있다.

넷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시점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다양한 무형자산항목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단순히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한다면 기업의 세무조정항목의 수와 관련 유보액을 관리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와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영업권인 반면, 우리의 현행 세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다. 따라서 영업권과 관련된 세무상 논점들을 무형자산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에 포함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III. 무형자산의 범위

1. 회계처리

가. 현행기준

무형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되며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정의인 식별가능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식별가능성, 자원의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이다.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자원에 대한 통제란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나. 국제회계기준

무형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에 규정되어 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 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인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을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항목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하는 영업권의 일부로 본다.

국제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식별가능성, 자원의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이다.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 할 것을 요구한다.⁶⁾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권리에서 나오며 법적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취득후의 지출은 연구 관련 지출과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취득한 진행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6)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①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②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 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이러한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재무제표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영업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며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그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

영업권의 측정은 기업가치에 변동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매입되는 기업의 초과이익, 초과이익의 기간 등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영업권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매법, 초과이익환원법, 현금법, 순이익환원법, 기업가치평가법 등 다양할 수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과는 별도로 무형자산(특허권 등)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⁷⁾ 즉, 국제회계기준에서의 영업권은 기업가치평가법에 의한 매입가액과 개별 순자산가액의 차액에서 인식가능한 무형자산(특허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영업권의 산정방법은 <표 1>과 같다.

7)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활성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매입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 현재의 최선의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금액으로 하면 될 것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지만 분리가능하지 않은 경우(사업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며 분리가능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교환 거래의 과거 경험 또는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과거 경험 또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가치 추정이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

〈표 1〉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영업권 산정방법

$$\text{영업권} = [\text{매입가액} - \text{기업의 순자산가액}] - \text{인식가능한 무형자산(특허권 등)}$$

여기에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① 자산의 수익성 지표(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 또는 독립된 당사자들의 거래조건으로 무형자산의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로열티 수입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
- ② 자산으로부터 추정되는 미래 순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다. 주요 변경사항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불분명하였다. 그 이유는 현행기업회계기준 제3호 제정 당시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이 미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출산업의 비중이 낮으므로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활동이 전문화되어 추출산업의 탐사·개발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서(국제회계기준 제1106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특성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리라고 기대되는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으며 식별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등 보유하려는 목적이 무형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사업목적이 무형자산을 분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보유 목적을 삭제하였다.

현행기업회계기준의 경우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요구사항과 기준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한 경우 이를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과거에 영업권이라는 단일 정보에 비해 세분화된 무형자산에 대한 많은 정보(개별 자산의 가치, 상각, 손상여부 등)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분화된 개별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장부상 자산의 합계가 실제 기업가치에 근접하여 기업의 실질을 보다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영업권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며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가 식별가능(분리가능)한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에 대하여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아 고객관련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⁸⁾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불분명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다. ①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② 일반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즉,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관련되는 경우 자산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하여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이 다르게 회계처리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연구개발지출이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세법 규정

가. 현행규정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는 상각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2>는 현행 법인세법 상의 무형자산을 열거한 것으로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등이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8)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의 문단16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개별 취득한다면 '비계약적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고 그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므로 고객관련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다.

〈표 2〉 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

구 분	범 위
무형자산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댐사용권 － 개발비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나. 현행규정의 문제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에 대해서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고 매수법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상 영업권만이 인식된다.⁹⁾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취득자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영업권은 사업결합원가가 당해 거래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권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지급한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영업권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다. 세법에서 영업권을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이라 정의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하의 영업권과는 구별되는 무형자산인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로열티, 계약고객리스

9) 결합대가보다 인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큰 경우 현행기업회계기준에서 인식하던 부의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은 전액 당기이익으로 인식되게 된다.

트 등을 영업권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법과 국제회계기준간의 범위상 충돌이 예상된다.¹⁰⁾

또한 사업결합시 기존 결합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던 우발부채나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면 이를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연구개발 비나 상표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로열티 계약, 고객리스트 등을 무형자산으로 새로이 인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영업권의 크기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등은 위의 <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무형자산과 세법상의 무형자산간의 범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에서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1호에서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세법에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 평가되고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서이 46012-11027, 2003.5.22). 이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대차차액으로 발생하는 회계상 영업권은 세무상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회계기준하에서 영업권을 기업가치평가법에 의한 매입가격과 개별순자산가액의 차액에서 인식가능한 무형자산(특허권 등)을 차감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는 회계상 대차차액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¹¹⁾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문단33, 42 및 43에 의하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진행단계와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지출은 내부창출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동일

10) 뿐만 아니라 부의 영업권 항목과 관련된 세무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의 영업권이 있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으로 최초 인식시 피매수회사의 자산 및 부채, 결합원가의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남은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세무상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기타)과 손금산입(△유보)의 조정을 가져오므로 세액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고 이연법인세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 과거에는 기업들이 영업권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구조조정(M&A)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회계상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M&A 시장상황에서 경영자의 M&A 의사결정의 주요한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세무상 이슈이다. 만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보다 웃돈을 주고 매입한 금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합병법인은 M&A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내용에 따라 개발비(무형자산) 또는 연구비(당기비용)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양도법인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각을 해야 하나, 동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된다(서이 46012-11329, 2003, 07, 15). 따라서 사업결합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에서 어떤 항목(영업권, 개발비,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연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무상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손금처리(Δ 유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Δ 유보액은 사업결합시 인식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소멸될 것이나 실무상 이러한 방법은 기업에게는 세무조정의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고 과세당국도 큰 효익을 얻지 못하므로 현행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현행 법인세법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과거에 단순히 영업권으로만 인식되었던 항목들이 브랜드, 특허, 고객목록 등 새로운 계정과목으로 인식될 것이다. 세법에서 상각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법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무형자산을 단지 영업권으로 본다면 무형자산의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에 있어 급격한 세무조정의 증대와 장부-세무상 차이(BTD)가 발생할 것이며, 과세당국 입장에서 큰 효익을 갖지 못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규정을 세법에 신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¹²⁾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개념(재평가모형 등)은 현행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무조정의 수와 장부-세무상 차이(BTD)의 증대를 가져오며 경영자의 기회적 의사결정 및 각종 비조세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¹³⁾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법으로는 역시 기업

12)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GAAP에 의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 이하 BTD)가 발생할 수 있으며, BTD는 세무조정의 수와 유보액의 증가와 맞물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정운오, 고종권, 김갑순, 노희천의 연구(2006)에 의하면 표본의 후반기(1997~2002년)부터 BTD의 크기(절대값)가 매우 증가하고 변동이 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의 대폭적인 개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현재의 세법체계(positive system)를 유지하는 한 향후 세무조정과 BTD의 크기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BTD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며, 심지어 조세공학(tax engineering)이 보편화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13) 경영자가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시 조세비용(tax cost)외에도 비조세비용(non-tax cost)이 존재한다.

회계존중원칙에 근거하여 무형자산과 관련된 규정을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법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인식된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도 세법상의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IV. 무형자산의 평가

1. 회계처리

가. 현행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과거 수 십 년 동안 검증가능성에서 우위를 가진 역사적원가를 이용하여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였지만 점차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증가하면서 공정가치¹⁴⁾ 측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기존의 역사적원가를 적용한 재무보고는 실제 기업가치와 보고되는 장부가치의 차이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정가치는 역사적원가보다 더 유용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편의가 적은 측정치이다.(Ball 2008) 하지만 공정가치가 역사적원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유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불완전성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가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뿐만 아니라 유·무형자산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조세비용이란 기업 또는 경영자가 부담하여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 등과 같은 조세 이외의 비용으로서 적은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회계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회계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book-tax conformity cost), 회계보고이익의 기간간 이전(income shifting across time)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조세계획 수행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리비용(agency costs) 등이 있다.(이준규, 김갑순, 2008.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p.160~161)

- 14)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의 측정시 활성거래시장(active market)에서의 시장가격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가치평가모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은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법외에도 시뮬레이션, 리얼옵션 평가방법 등 그 기법들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장거래로 공정가치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측정법들이 발달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국제회계기준

현행기업회계기준 제3호는 무형자산에 대해 역사적원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공정가치로 측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원가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을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며, 재평가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¹⁵⁾ 그러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①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나 ②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무형자산도 있다.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활성시장을 기초로 한 최종 재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¹⁶⁾ 재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산이 손상되어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나 그 증가액 중 그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감소액 중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

15) 무형자산에 대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택시 라이선스, 어업권이나 생산할당량에 대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으나, 브랜드, 신문 제호, 음악과 영화 출판권, 특허권이나 상표는 성격상 독특하기 때문에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무형자산이 매매되더라도 계약은 개별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협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거래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자산에 대하여 지급한 가격이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가격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16) 활성시장은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경우에 성립되는 시장이다.

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감소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줄이게 된다. 또한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 누계액은 그 잉여금이 실현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고 자산의 폐기나 처분 시점에 전체 잉여금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하면서 실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현된 잉여금은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기초로 한 상각액과 자산의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하여 인식하였을 상각액의 차이가 되나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기손익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시 최초의 인식가액을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로 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자산재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주요 변경사항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각 회계연도마다 무형자산의 측정과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문단72에 의하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측정방법으로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유럽 각국을 보면 유·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¹⁷⁾ 그 이유는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경우 많은 비용(상각방법 및 금액, 내용연수, 잔존가치와 관련된 재측정비용 및 세무조정 등)의 증가와 유보액 관리에 따른 세무상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도입할 여러 유인들(재무구조개선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 세법 규정

가. 현행규정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점의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장부상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므로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유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재평가로 증가한 차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여 자본에 가산한다. 물론, 재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17) KPMG, 'The Application of IFRS : Choices in Practice', 2006.12.에 의하면 기업들이 계정과목별로 재평가(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 원가모형(98%) 또는 재평가모형(2%)

무형자산 : 원가모형(100%) 또는 재평가모형(0%)

투자부동산 : 원가모형(42%) 또는 공정가치모형(58%)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재평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세법 제42조 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함)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산재평가를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의 재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법은 이를 임의평가증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재평가잉여금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을 수행함으로써 법인세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재평가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며 관련 유보액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유보액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세소득 및 납부세액을 증가시킬 유인을 갖고 있으므로 비상각대상 무형자산의 경우라면 이를 관리하고 있다가 결손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 처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나. 현행규정의 문제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유·무형자산 등이 현재의 공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시점에 유·무형자산 등을 재평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무형자산의 평가로 인한 유보(△유보)액이 발생하고¹⁸⁾, 경영자는 유보(△유보)를 활용하여 회계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에서 유보(△유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유보액의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재평가모형을 도입함에 따라 세무상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 인식에 대한 현행 세법과의 차이가 커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가능성¹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재평가모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형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인정한다면 미실현손익을 과세하여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세법이 제시한 공정가치의 측정에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세법이 공정가치 측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18)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무형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기업이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면 대부분 재평가이익(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 (기 타)

<손금산입> 무 형 자 산 ××× (△유보)

19) 예를 들어, 무형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손익을 기업의 현재 상황(이월결손금 존재, 이익의 크기 등)에 따라 조세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용연수변경, 손상차손,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와 유사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법이 기업회계준중원칙을 적용하는데 효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세법의 자산측정의 기본원칙인 취득원가주의가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초기의 유보액 관리비용 및 과세소득 회피유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세법에서도 일시적인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관련 비용을 제거하고 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정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V. 무형자산의 상각 및 손상

1. 회계처리

가. 현행기준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²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취득원가에 기초하며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 기술적, 공학적 또는 유형의 진부화, 산업의 안정성 및 제품시장의 수요변화,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며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²¹⁾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20)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가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산의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② 자산의 감액손실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③ 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한다.

21) 일정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등),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잔존가액을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²²⁾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²³⁾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이 취득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한다.²⁴⁾

무형자산이 진부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내용연수가 장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용가능일로부터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 이내로 추정하였으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사용가능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한다. 또한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

22)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등이 있다.

23) 무형자산을 일단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에는 공정가액의 변화에 따른 평가증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분리 및 양도의 상대적 제한 등이 무형자산의 기본 특성이므로 공정가액의 측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①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②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하고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나. 국제회계기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²⁵⁾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전략,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²⁶⁾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의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²⁷⁾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 25) ‘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 26)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 있다.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 27)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는데 그 자산이 사용될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용되었고 내용연수가 종료된 유사한 자산에 대해 추정일 현재 일반적으로 형성된 매각 가격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에는 검토하며 잔존가치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영(0)이 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며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데 그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또는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²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가능액을 추정한다.²⁹⁾ 회수가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순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³⁰⁾ 자산의 회수가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이때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자산이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28) 비한정내용연수를 유한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따라서 회수가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고 회수가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29)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연차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30)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하는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는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자산 성능의 향상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유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다.³¹⁾

다. 주요 변경사항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하면,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또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모든 관련요소(법, 규정, 계약, 경쟁, 경제요소 등)를 분석하여 특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순현금유입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이라고 보고 있다. 비한정내용연수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무한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은 하지 않으나 매년 손상검사(yearly impairment test)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7에 의하면, 정당성을 갖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회계정책 및 추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하고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즉 매년 말 무형자산의 실질에 따라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회계처리가 매우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기업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나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영업권의 상각여부와 관련하여 상각설(현행기업회계기준)에서 비상각설(국제회계기준)로 변경되었다. 상각설에 의하면 영업권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영업권의 용역잠재력이 감소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효익 제공기간 동안 상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현행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9) 또한 현행 세법에 의하면 영업권은 5년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도

31) 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상각액을 조정한다.

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및 2항)

반면 비상각설에 의하면 기업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면(자산의 손상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업권을 상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영업권은 영속적이며 기업가치의 감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이 영업권을 상각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 견해를 지지한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일 현재 손상이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각설은 과거에 취득한 영업권이 미래의 수익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업자체 내에서 창출한 새로운 영업권의 역할을 등한시 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기업회계기준은 손상의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매 연도말 손상징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동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는데 현행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 영업권은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³²⁾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2. 세법 규정

가. 현행규정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문단104에 의하면,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결정하며 취득 이후에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적정성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회계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선택권의 확대는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가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상각기간을 현재의 내용연수에 비해 늘릴 것이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에서 체감잔액법(정률법 등)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폭넓은 회계선택권에 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감가상각방법), 제28조 및 29조(내용연수)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데, 그 내용은

32) 손상의 징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요한 시장가치의 하락, ②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의 불리한 변화, ③ 시장이자율(또는 투자수익률)의 상승, ④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장부금액 보다 낮음, ⑤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해의 증거, ⑥ 자산의 유희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등 자산사용의 범위와 계획에 대한 불리한 변화, ⑦ 자산사용의 성과 감소

다음과 같다.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을 제외함)의 경우 일반 사업용자산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1항) 본 연구에서는 내용연수의 변경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다.³³⁾ 내용연수의 변경에 대한 이익조정과 과세소득의 회피가능성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감소하지만 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 과세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축소하는 경우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상각부인액(유보)이 발생하여 현재의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법인세 납부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차후 발생할 손금추인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연수를 축소변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영업권의 상각여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5년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항목이다. 따라서 법인이 당초 결산시 영업권 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법기통 23-0...1)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 세무상 인정된 영업권 상각비를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에는 회사가 영업권 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³⁴⁾

나. 현행규정의 문제점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문단111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한 무형자산의 경우 매년 말 회수가능액을 측정하여 손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3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34)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에 회사가 영업권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업의 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손상차손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경우 손상차손 외에는 가치변동분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손상차손의 금액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거에는 상각비에 해당하던 금액이 손상차손의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한편 현행 세법은 특정자산의 손상차손(재고자산폐기손실, 파산한 주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정자산 평가차손, 시설개체 및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등)만을 결산조정사항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세법 규정 하에서는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전액 손금부인된다.³⁵⁾ 이로 인해 세무조정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손상차손의 부인으로 발생하는 유보액을 시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과세소득의 조정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상각비의 일부로 보아 시부인해야 할지 아니면 자산의 임의평가로 보아 전액부인 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영업권 평가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매년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여 손상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회사가 세무상 인정되는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여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문단 107과 108에 의하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의 내용연수에 따라 5년부터 50년까지 규정되어 있다. 만일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라도(영업권은 5년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산조정사항의 효과로 인해 세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통한 이익조정³⁶⁾이나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사가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 손상차손을 거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이익을 줄일 여지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이를 전액 부인하거나 실무상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시부인이 이루어 질 것이고 대부분의 금액이 상각부인액(유보)으로 인식됨으로써 현재의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미치

35) 손상차손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결산조정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 이외에는 임의 평가감으로 보아 전액 손금부인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당기 상각비로 처리하여 상각시부인 계산시 포함한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유보액이 발생하며, 이 부분 또한 세법의 제·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손상차손 항목에 대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6) 예를 들어,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경우 매년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데 경영자가 손상차손의 시기와 금액을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 못한다. 그러나 미래의 반대조정(Δ 유보)을 통한 미래의 과세소득의 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회사가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끝나는 연도에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인식함으로써 공제가 끝난 이월결손금의 연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손상차손의 과다인식은 현재의 결산조정사항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해 당기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의 Δ 유보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 대한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GAAP과 독자적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GAAP을 통해 결산이 확정된 당기순이익으로 부터 법인세법 및 기타 부속법에 의거한 세무조정을 통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³⁷⁾ 세무조정은 법인이 결산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과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가산 또는 차감조정을 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된다. 결산조정사항³⁸⁾은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현행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결산조정사항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으로서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손금을 부인하나 기업이 비용을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³⁹⁾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은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충당부채의 조정을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은 납세자의 측면에서 세무관련 장부를 기업회계 장부와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중수고를 경감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세무관련 장부에 대한 감시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으로 인해 납세자와 조세당국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박정우와 손상욱 2001)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은 태생적으로 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trade-off)관계에 직면하게 한다. 첫째, 기업과 과세당국 간 정보불균형을 초래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의 대표적인 예인데, 만일 최초연도의 상각비에서 한도초과(유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기업과 과세당국이 모두 파악하고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당기 상각비에 대하여 한도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처럼 Δ 유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현재 Δ 유보에 대한 정보를

37)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이하 GAAP)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회계관습이 실무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사용되어 온 결과 다수의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GAAP은 다수의 사회적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현재 사용 중이나 새로운 환경과 경제적 사건의 출현으로 인해 앞으로 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의 제정을 시발점으로 GAAP의 제·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실질을 보여줄 수 있는 GAAP을 요청하고 이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제·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8) 무형자산과 관련이 있는 결산조정사항에는 상각비, 손상차손 등이 있다.

39) 전기에 손금부인액에 대해 당기에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전기손금부인액을 추인한다. 이 효과는 반영하지 않고 최초 무형자산 관련 상각비의 경우로만 가정하였다.

가지고 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현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한도미달액을 기회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익조정 및 조세의 조정이 가능하다.

둘째, 결산조정사항은 발생항목(accrual)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이익조정의 반대효과는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당장 결산조정사항을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보고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법인세유출액의 증가와 감사인에게 적발될 가능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결산조정사항의 과대계상은 당기의 과세소득(법인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⁴⁰⁾ 차후에 발생할 반대조정(Δ 유보)은 미래의 과세소득(법인세)을 감소시키므로 경영자는 또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의사결정에 직면할 것이다. 경영자의 보고이익과 과세소득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회계이익을 높이 보고하고 과세소득은 낮게 보고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선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산은 과대평가하려 하고 부채는 과소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이익의 과대계상과 법인세납부액은 서로 상충관계가 있으므로 경영자는 주어진 회계원칙에서의 재량권과 세법의 조세혜택 및 이들 간 괴리를 이용하여 최적전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백원선과 최 관 1999, 박종일과 김경호 2002)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의 한도는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부분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다. 단지 세수충실화를 위해 이를 과세당국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결산조정은 신고조정에 비해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경영자는 자신의 효용 및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결산조정사항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과세소득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만일 결산조정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가 기업회계와 큰 괴리가 없다면 세무이익을 낮추는 장점을 지닐 뿐 아니라 회계기준을 왜곡하여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려는 유인도 막을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의 한도는 관련 거래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경제적 사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련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문철과 이준규 2008)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기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업의 실질에 맞는 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획일화된 한도 규정은 오히려 기업의 실질을 저해하고 기업회계가 세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결산조정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에 비해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더 크다면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무형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이 발생할 때 많은 세무조정이 발생하여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40) 상각비를 한도초과하였다면 한도초과액 만큼 결산서상 회계이익이 과소하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도초과액은 손금부인되므로(유보) 결국 당기의 과세소득(법인세)은 변하지 않는다.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손상차손의 규정을 새로 입법화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GAAP에 의한 회계이익과 법인세법으로 산출한 과세소득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다음에 열거된 이유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않다.⁴¹⁾

첫째, 법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세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 GAAP으로 인식한 회계이익은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당기 경영성과를 가장 잘 반영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적 목적, 조세회피수단의 제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GAAP으로 산출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줄여야 사회후생에 있어 공평과세가 될 것이다.

둘째,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근간은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자 간 큰 차이는 없다. 보통 세법의 입법과정은 이론을 먼저 도출하여 정책을 주도적으로 미리 제안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현상의 출현(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 이후 세법이 입법화 또는 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세당국은 이러한 차이를 신속히 판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구성원 간 파레토최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만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있어 세무상 관련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에서 이를 신속히 도입하여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시기적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의 확대는 회계정보제공자가 이해상충의 관계(trade-off)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과대하게 과세소득은 과소하게 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가 커짐에 따라 경영자는 회계이익의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가 회계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의 증가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양자 간 소득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보다 관련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GAAP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이러한 규정 및 해석을 마련하지 못하고 편의상 과거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양자 간 차이를 확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순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원인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무형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상각방법과 상각률,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등)을 신속하게 입법 또는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가장 간편한 대처방법으로

41) GAAP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바르게 측정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세법은 국가정책(소득재분배 등)을 달성하고 올바른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GAAP과 세법은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둘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는 기업회계기준원칙을 확장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신설되는 무형자산의 종류 및 상각방법 등과 관련된 부분을 법인세법상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GAAP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양자 간 차이를 줄임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방법을 일부 항목에서 그대로 인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⁴²⁾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조정사항은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결산조정사항의 유지로 발생하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결산조정사항을 폐지하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와 같은 사회후생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과 관련된 항목들(상각비, 손상차손)은 신고조정을 통해 시부인함으로써 GAAP과 세법 간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 기업들이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VI. 결 론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도입한 나라의 세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각국의 세법체계가 다른 경우 세법은 여러 회계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므로⁴³⁾ 국제회계기준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회계기준하에서 다른 세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간

42) GAAP에 의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불일치는 납부세액의 계산, 해석의 차이로 오는 오해, 새로운 규정의 산출 등으로 인한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양자 간 차이는 기업의 올바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GAAP의 적용보다는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선호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유·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업의 실질을 따르지 않고 편의상 법인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출이라는 세법의 목적이 GAAP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회계정보이용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3) 세율의 차이는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가져올 것이고 자산(부채)의 인식 차이는 자산(부채)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전거래가 발생하거나 초과수익 및 조세회피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나라 간 세법체계가 유사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측정과 인식에 있어서도 국제회계기준은 국가 간 많은 변화와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은 공정가치회계의 도입이다. 공정가치로 무형자산을 공시함으로써 장부가치와 기업가치의 차이를 줄여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실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 및 측정함에 있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공정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의 외부전문가가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무형자산과 관련된 세법 규정간의 차이가 커지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국제회계기준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형자산에 있어 무조건 공정가치회계를 도입 및 적용한다면 미실현손익을 과세하여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무형자산 공정가치의 측정방식의 신뢰성 및 측정방식에 의한 차이로 인해 세법의 기본원칙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세법 자체가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방식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⁴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의 제고 및 자본비용의 감소 등 여러 가지 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법인세법과 충돌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 공정가치 적용,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법인세법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비조세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무형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의 종류 및 유보액의 크기가 일정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주어진 한도에서 세무조정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비용의 산출에 신속함과 정확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점차 커짐으로써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간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규정을 세법에서 신설 또는 개정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법인세법에서도 무형자산의 재평가를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함으로써 장부-세무상 차이(BTD)를 줄이고 국제회계기준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무형자산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속

44)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유럽 각국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유럽 여러 지역의 세법을 통일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세법으로 인한 과세는 실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모든 자산 및 부채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세무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Tax Harmonisation in Europe—the determination of corporate taxable income in the EU member states (Andreas Oestreicher et al. 2007. ZEW.)

하게 입법 및 개정하여 현재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여러 항목들을 세무상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무형자산과 관련된 결산조정사항을 정비하거나 폐지하여 관련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측정과 인식, 손상 및 감가상각,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법규정의 신설 및 변경, 세무조정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08. 국제회계기준도입시 영향이 큰 회계처리 항목과 사전공시해설 PPT자료.
_____. 200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PPT 자료.
- 김규호. 2008.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3.
- 김문철 · 이준규. 2008.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 회계저널 : 125-185.
- 김태식. 2007. Simulation, Real Option and IFRS.
- 박정우 · 손상욱. 200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2(1) : 53-91.
- 박종일 · 김경호. 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7(2) : 81-116.
- 백원선 · 최 관. 1999. 이익조정과 법인세 최소화 동기. 회계학연구 24(1) : 81-116.
-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신현걸 · 정재연. 2009.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10(4) : 43-73.
- 이영한 · 최원석. 2009.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6(4) : 9-36.
- 이정민 · 조한철 · 강정무 · 이창기. 2008.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 이장규 · 박승덕 · 신현상 · 안민호 · 이세경 · 안상미. 2008. IFRS, 회계국경이 사라진다.
- 이준규와 김갑순. 2008.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 정운오 · 고종권 · 김갑순 · 노희천. 2006.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회계학연구 31(4) : 203-238.
- 조세연구원. 1997.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안.
- 최경수. 2007. 기업회계기준서해설.
_____. 2008. 국제회계기준해설.
-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 국제회계기준 적용 매뉴얼.
- 한국조세연구원. 1997.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안.
- 한국회계기준원. 200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_____. 2008. 기업회계기준서해설(K-IFRS 과정).
_____. 20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
- Andreas Oestreicher and Christoph Spengel. 2007. Tax Harmonisation in Europe - the determination of corporate taxable income in the EU member states. ZEW : 1-34.
- David Cairns. 2006. The use of Fair Value in IFRS. Accounting in Europe Vol 3 : 5-22.
- Ernst & Young in Canada. 2008. IFRS : 10 Reasons tax must be involved.
- Ester Oloveras and Xavier Puig. 2005.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Financial

Reporting in Spain. Accounting in Europe Vol 2 : 195 – 207.

Eva Eberhartinger and Margret Klostermann. 2007. What if IFRS a Tax Base? New Empirical Evidence from an Austrian Perspective. Accounting in Europe Vol 4 : 141 – 168.

Mattias Hamberg, Jiri Novak, and Mari Paananen. 2006. Evidence of European IFRS Adoption : The effect on goodwill and intangible assets. Working paper : 1 – 33.

A Study on Reform of Tax Law Related Intangible Assets for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hawn, Hyuk* · Park, Sung Jin** · Lee, Hyo Ik***

— <Abstract> —

Whe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ereafter IFRS) is adopted in 2011, Important changes will be made in the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s. As IFRS adopts fair value accounting as well as principle-based accounting, the book-tax difference will be increased further under present corporate tax law. In particular, as the size and type of intangible asset increase, related tax adjustment should be also increased. Moreover, Increasing in book-tax difference(BTD) may offer managers an opportunity to manage earnings and to avoid taxation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payment. Following suggestions, we made in this paper.

First, corporate taxation must allow temporary intangible asset revaluation. second, tax deduction should be admitted for the accounts of IFRS such as brand, license and customer list to decrease the expenses of BTD. third, as tax deduction may induce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s, we propos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book and tax should be abolished or, at least, minimized.

We analyzed several issues of intangible asset such as measurement, recognition, impairment, amortization and fair value estimation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IFRS. Some suggestions are made regarding taxation system and local law changes to solve the pending issues.

<Key words> IFRS, Intangible asset, fair value, book-tax difference, tax deductions allowed by book entry

* Doctoral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